

의안번호	2214228
의 퇴 인	김성원 의원
회 답 일	2026. 1. 21.
추계번호	25A615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재정 소요는 2027년 8억 6,200만원, 2031년 9억 6,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5억 6,400만원(연평균 9억 1,3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가스배관위원회 설치·운영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 15까지 신설)	862	887	912	938	965	4,564	913
－ 비상임위원 수당	60	60	60	60	60	300	60
－ 사무국 인건비	689	711	735	758	783	3,676	735
－ 사무국 운영비	113	115	118	120	122	588	118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9조의9 신설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9조의6¹⁾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심의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둠(제1항)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내는 상임으로 함(제2항)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제3항) 가스배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제4항)	의무규정

1)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9조의10 신설 (위원의 자격 등)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제1항)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경제·경영·전기·에너지공학이나 그 밖의 가스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가스·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력·가스·통신·교통 등 기간산업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전력·가스 등 공공요금 및 망요금 체계의 산정·검증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항 각 호의 분야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제2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안 제39조의12 신설 (위원회의 기능)	가스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1항) 1. 제18조의2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중 공급배관 건설계획 관련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시설공사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39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시설공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의 운영·관리 및 그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39조의7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 이용제공 거부·지연의 적정성 및 부당한 이용 제공 거부·지연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6.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7.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 및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8.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9. 지점별 배관의 가스 인입가능량 분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0. 배관 시설이용자의 인입 여부 및 인입가능량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점별 배관의 인입가능량 분석 결과와 실제 공급 실적 간의 차이 검증에 관한 사항 12. 배관 계통정보 및 시설운영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서 가스배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4.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3에 따른 재정을 함 (제2항) 가스배관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가스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음 (제3항)	
	안 제39조의13 신설 (위원회의 재정)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배관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제1항)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제4항)	재량규정
	안 제39조의15 신설 (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가스배관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5조의2제2호 신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²⁾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9조의9 신설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안 제39조의10 신설 (위원의 자격 등)		
	안 제39조의12 신설 (위원회의 기능)		
	안 제39조의13 신설 (위원회의 재정)		
	안 제39조의15 신설 (조직 및 운영)		

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45조의2제2호 신설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금품을 몰수 또는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³⁾ 국가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정수입 증가액은 수뢰죄 등 건수와 1건당 몰수·추징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가스배관위원회 ①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회의 수당, ②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③위원회 운영비를 추계
 - 안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는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므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각 추계 대상 비용은 전기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전기 공급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의 재정(裁定)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그 설치 목적, 심의 사항, 위원 구성 등에 있어 가스배관위원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가정할 때 전기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함
- 기존에 발생 중인 재정소요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는 기존에 산업통상부가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중복되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자문위원회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음
 - * [참고자료] 도시가스 관련 산업통상부 내 심의기구 운영 현황
 - 이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 재정소요(가스배관위원회 운영 비용)에서 기존 재정소요(기존 자문위원회 운영

3)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비용)를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와 기존 자문위원회의 기능 중복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존 재정소요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회의 수당의 경우 참석 수당과 안전검토 사례비를 합산하여 추계**

- 전기위원회의 사례⁴⁾를 준용하여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안 제39조의9 제2항에 따른 최대 정수인 9명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해당 분야의 3급 이상 공무원 1명이 맡는 것으로 가정
 -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⁵⁾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회의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위원은 총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으로 가정
 - － 이외에 전기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법률분쟁조정,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력계통 및 신뢰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에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설치·운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회의는 최근 4년간(2022~2025년) 전기위원회의 개최 사례를 준용하여 연 15회⁶⁾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예산 집행 지침과 전기위원회 수당 지급 사례를 고려하여 회당 50만원으로 가정

4)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및 비상임위원 7명(총 9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겸임

자료: 전기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rec.go.kr/intrcn/selectOrgcht.do>)

5)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1.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6) 전기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전기위원회(회)
2022	16
2023	15
2024	15
2025	11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전기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가 각각 10만원, 4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회당 50만원으로 가정
-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7)에 따라 단순한 회의 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며, 위원의 수와 연간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가스배관위원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의 경우 전기위원회 사무국의 사례를 준용하여 총 9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봉급 및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추계

- 2026년도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에 대한 각목명세서⁸⁾의 반영 내역을 준용하여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해 4급(사무국장)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등 총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전기위원회 사무국의 현황을 보면 4급(사무국장) 1명, 5급 6명, 6급 이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⁹⁾, 본 추계에서는 각목명세서의 예산 반영 내역에 따름
- 인건비에는 봉급, 정근수당(6급 이하), 성과상여금, 정액수당(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기술정보수당 등),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및 연가보상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각 금액은 전기위원회의 2026년도 인건비 예산 반영 내역을 총액으로 준용한 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추계

7)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1.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000원내(서면심사 15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8)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직 개편 전 산업통상부가 작성한 2026년도 예산안 사업별 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함

9) 자료: 전기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rec.go.kr/intrcn/selectOrgcht.do>)

- 가스배관위원회 운영비의 경우 전기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임차료 및 여비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추계
 - 2026년도 전기위원회 기본경비에 대한 각목명세서의 반영 내역(위원 회의 수당의 경우 별도 추계하였으므로 제외)을 총액으로 준용한 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추계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법안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회의 수당

-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회의 수당은 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 사례비를 합산하여 추계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원(연평균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참석 수당: 8명 × 15회 × 10만원 = 1,200만원 (5년간 총 6,000만원)
 - 안전검토 사례비: 8명 × 15회 × 40만원 = 4,800만원 (5년간 총 2억 4,000만원)

[표 2]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회의 수당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회의 수당	60	60	60	60	60	300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가스배관위원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2026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른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예산안 금액을 준용한 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6억 7,600만원(연평균 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3] 가스배관위원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가스배관위원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689	711	735	758	783	3,676	7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가스배관위원회 운영비

- 위원회 운영비는 2026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른 전기위원회 기본경비 예산액을 준용한 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억 8,800만원(연평균 1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4] 가스배관위원회 운영비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가스배관위원회 운영비	113	115	118	120	122	588	1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①기준에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부 내 자문위원회의 재정소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②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45조의2)에 따른 재정수입(뇌물 수수 등으로 인한 몰수금·추징금 수입)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총 재정소요에서 기존 재정소요를 차감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 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도시가스 관련 산업통상부 내 심의기구 운영 현황

□ (안 제39조의12제1항제1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심의기구

위원회	위원 현황 (자격, 당연·위촉)	심의 사항	회의개최 현황('21~'25)
가스수급 위원회	(정부) 자원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학계) 대학교수 예경연 KDI 등 (업계) 전력거래소 도시가스협회 한전 발전사 등	○ 수요전망, 시설계획 및 부문별 정책방향 심의 ○ 수요전망, 시설계획 수립방안 논의 등 ○ 탄소중립 및 정부정책 등 가스산업 방향	○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 ('21.3.26.) 제2차 - ('21.4.26.) 제3차 ○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 ('22.4.29.) 제1차 - ('23.4.26.) 제2차 ○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 ('23.11.2.) 제1차
수요예측 실무위원회	(정부) 가스산업과장 (학계) 대학교수 예경연 KDI 등 (업계) 전력거래소 도시가스협회 한전 발전사 등	○ 장기 도시가스 수요전망 ○ 장기 발전용 수요전망 ○ 신규 수요 검토 및 장기 국가수요 확정	○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 ('21.2.5.) 제3차 ○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 ('22.9.26.) 제1차 - ('22.12.7.) 제2차 - ('23.1.6.) 제3차 ○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 ('24.5.27.) 제1차 - ('25.4.18.) 제2차 - ('25.9.19.) 제3차
시설계획 실무위원회	(정부) 가스산업과장 (학계) 대학교수 예경연 등 (업계) 법무법인 에너지정책연구원 등	○ 국가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 저장탱크/공급배관/화송출 설비/하역설비 ○ 공급인프라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등	○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 ('21.2.22.) 제4차 ○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 ('22.10.25.) 제1차 - ('22.12.21.) 제2차 - ('23.1.12.) 제3차 ○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관련 - ('24.6.13.) 제1차 - ('25.5.27.) 제2차

□ (안 제39조의12제1항제7호) 배관시설이용료 관련 심의기구

위원회	위원 현황 (자격, 당연·위촉)	심의 사항	회의개최 현황('21~'25)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자원산업정책관 (위원) - 소비자관련 기관 또는 단체 추천 - 근로자 단체 추천 - 학계, 공공요금 또는 회계부문 전문가 - 도시가스협회 추천 - 한국전력공사 추천 -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과장 - 한국가스공사 담당부서 처장	○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조정 (원료비 조정 제외)에 관한사항 ○ 천연가스 도매요금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서면심의 (‘22) 서면심의 (‘23.4.25.) 제1차 (‘24) 서면심의 (‘25) 서면심의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장) 자원산업정책관이 위촉한 자 (위원) - 회계부문 전문가 - 법무부문 전문가 - 경영, 경제 또는 공공 요금부문 학계 전문가 -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과장 - 한국가스공사 담당부서 처장	○ 천연가스도매공급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산정 관련 주요 특이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3년 - (4.11.) 제1차 - (4.17.) 제2차 - (4.24.) 제3차 ○ 2024년 - (4.2.) 제1차 - (4.8.) 제2차 - (4.18.) 제3차 ○ 2025년 - (4.4.) 제1차 - (4.11.) 제2차 - (4.16.) 제3차

□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운영 중인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¹⁰⁾ 현황

○ 안 제39조의12제1항제9호·제10호 관련

위원회	위원 현황 (자격, 당연·위촉)	심의 사항	회의개최 현황('21~'25)
배관시설 이용심의 위원회	(당연직: 1명) 산업부 소속 공무원 (전문위원: 6명) 산업부, 공사, 민간 각 2인 추천	○ 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 기타 가스배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심의위원 과반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 2024년 - ('24.7) 제1차 - ('24.8) 제2차 - ('24.10) 제3차 - ('24.12) 제4차 ○ 2025년 - ('25.2) 제5차 - ('25.7) 제6차 - ('25.10) 제7차 - ('25.12) 제8차

10) 한국가스공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할 때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제시

* 개정안 제안이유

(...)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이용·공사 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민간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